<2024년 3월 6일 써니행정법 최신판례특강>

01

<u>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u> <u>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u>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u>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u> 또한 <u>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u>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u>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u>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u>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u>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u>국가를 일반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u> 따라서 <u>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u> 앞서 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 9. 21, 2023두39724).

02

-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u>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u>하고 그 내용이 <u>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u> 관할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u>새로운 거부처분</u>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u>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u>, 해당 처분에 대한 <u>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u>에는, <u>그 이의신청에</u> 대한 결정(기각결정 포함)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각결정 포함)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2] 甲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u>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u>,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u>이의를 신청</u>하였으나, 甲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u>종</u>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 21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절

차적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u>Z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조정금 산정결과 및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Z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Z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서의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명백하고,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하여 <u>다시 재산정,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u>등을 종합하면, <u>2차 통지는</u>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u>처분으로</u>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22. 3. 17, 2021두 53894)</u>

<비교판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u>직권으로 갑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u>하고, 갑 등의 <u>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u>를한 사안에서, <u>재심사 결과 통보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u>이 된다(대판 2016. 7. 14, 2015두58645).

2-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2. 관계 법령이나 행정청이 <u>사전에 공표한 처분기준에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판 2021, 1, 14, 2020두 50324).</u>

03

<u>공정거래위원회가</u>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u>관계 행정기관의</u> <u>장에게 한</u>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u>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u>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처분</u>이다(2023. 2. 2, 2020두48260).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u>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u>, <u>구체적인 경우에</u>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u>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u>, 법치행정의 원리와 <u>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u>하여야 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해당한다(대판 2023. 2. 2, 2020두48260).

<참고판례>

- **1.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0. 11. 18, 2008두167).
- **2. 행정청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 6. 10, 2010두 7321).

04

<u>하도급법상 벌점 부과행위는</u>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u>(대판 2023. 1. 12, 2020두50683).

0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 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甲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甲회사가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위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하였다며 甲회사에 정산금 납부통보를 하자, 甲회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산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甲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분쟁은 공법 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23. 6. 29, 2021다250025).

<u>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u> 가능하다.

[1] <u>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u>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u>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u>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u>청구의</u>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판 2020. 1. 16, 2019다264700).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양자 간의 소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반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23. 6. 29, 2022두44262).

07

위임근거인 법령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 정한 것이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 3.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재요양 불숭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숭인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내용·형식·입법취지를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

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인정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기준을 정해주는 '행정 규칙'이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내용과 개정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23. 4. 13, 2022두47391).

<비교판례>

<u>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u>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 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u>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u>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u>법원이</u>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u>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u>취기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 다2647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개정 전 고 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 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 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 은 후 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개정된 고시'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 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20. 12. 24, 2020두39297).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 X) 2022 경찰간부

: 0

- 1. <u>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u>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 2. 이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이다.
- 3.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4. 다만 이러한 <u>후속 변경처분 권한</u>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u>이 <u>유</u> 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 5. 당초의 <u>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u> 처분의 <u>집행은 종료되어 처분의</u> <u>효력이 소멸하는 것</u>이므로, 그 후 <u>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u> 분에 해당한다.
- 6.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판 2022. 2. 11, 2021두40720).

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세부적인 검토기준</u>으로 이 지침의 법적 성격은 <u>행정규칙</u>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u>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u>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u>국</u>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 상급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둔 <u>행정규칙(재량준칙)에 불과</u>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u>개발행위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u>,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u>재량준칙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인 때에는 그 규정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판 2023. 2. 2, 2020두 43722).</u>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u>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행정지도)</u>는 <u>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u>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u>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u>을 2019. 12. 17.부터 <u>금지한 조치(행정지도)</u>는 비록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일정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을 억제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u>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u>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헌재 2023. 3. 23. 2019헌마1399).

11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위반행위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처분은 제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인 <u>리베이트 제공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u>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22. 5. 13, 2019두49199·49205).

〈참고조문〉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가 병위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2

법령위반으로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u>위</u> 반행위 종료일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대판 2022. 3. 17, 2019두35978).

<참고조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 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 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제한이 발생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14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u>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u>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u>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u>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

터 <u>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u>.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피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자유를 침해한다(현재 2023. 3. 23. 2020현가1 등).

15

법관이 행하는 <u>재판사무의 특수성</u>과 그 <u>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u> <u>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u>, 법관의 재판에 <u>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u>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u>위법한 행</u>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3. 6. 1, 2021다202224).

16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대판 2022. 9. 29, 2018다224408).

17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u>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u>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u>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u>, 그 직무행위가 <u>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u>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22. 8. 30, 2018다 212610 전합 참조)(대판 2023. 1. 12, 2020다210976; 대판 2023. 1. 12, 2021다20118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형성된 <u>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제한이 아니므로</u>,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한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현재 2022. 1. 27, 2016헌마364).

19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소유하는 영업시설 ·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연혁과 집합제한조치의 특성, 정부의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보상책 및 청구인들이 받은 영업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 즉, 국가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상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이나 대상의 범위,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정해질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정부는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감염병예방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되어 2021년 3분기 이후 발생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영업매출이 감소하였더라도, 집합제한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매출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기간이 짧고, 영업이 제한된 시간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였으며 영업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포장・배달을 통한 영업은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23. 6. 29, 2020현마1669).

- 1.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u>보상금 중액청구의 소는</u>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u>당사자소송의 형식</u>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중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u>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u>보상금의 중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중액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중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2. 11. 24, 2018두67 전합).

<비교판례>

- 1.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 01.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X) 2022 지방직·서울시 9급

: 0

21

- 1.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 2. 따라서, <u>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u> <u>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u>용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22. 11. 24, 2018 두67 전합).

0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X) 2022 군무원 9급

: 0

02.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2019 국가직 7급

 $: \bigcirc$

22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u>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u>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u>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u>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22. 11. 30, 2017다257043).

23

1.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u>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u>, <u>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u>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u>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u>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권 역시 요양급여비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법리는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23. 10. 12, 2022다276697).

24

전소인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와 소송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을 직권변경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는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중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후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전소의 소송물인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후소와의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甲 등에게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23. 3. 16, 2022두58599).

<참고 판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u>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판 2001. 1. 16, 2000다41349).</u>

01.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또한 소송물인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X) 2023 경찰간부

: 0

02.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이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X) 2015 경행특채 1차

: C

03.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 X) 2022 지방직·서울시 9급

: X

25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대판 2023. 6. 29, 2020두46073).

26

시장 등이 한 <u>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u>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u>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u>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u>위반죄는</u>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23. 4. 27, 2020도17883).

<참고 판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21. 9. 16, 2019도11826).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 1. <u>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처분적 명령)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u>
- 2.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甲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22. 12. 1, 2019두 48905).

<참고판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 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2005두 15168).

0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 ·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2020 지방직 · 서울시 7급

: X

28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에 대해 행한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u>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u>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 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u>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u>(대판 2023. 7. 13, 2016두34257).

29

1.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

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 2.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3. 만약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당연히요청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4. 그러나 <u>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후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기를 거부</u>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해당 건축부지에 대하여 <u>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u> 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건축행정청은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u>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u>소·철회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판 2020. 7. 23, 2019두31839).
- 5.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신고수리처분을 한다면,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축신고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수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다면, 그 건축신고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3. 9. 21, 2022두31143).

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갑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갑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갑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갑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경기도의 보조금지급 등 사무가 <u>각 시장·군수에게</u> 위임(기관위임)된 이상 <u>주위적 피고</u> 경기도지사의 위와 같은 통보는 예비적 피고 ○○시장에 대한 <u>지도·감독권의 행사일</u>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처분으로 볼 수 없</u>음에도, 이와 달리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에 대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u>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의 상고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 ○○시장에 대한 소까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u>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되,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고, <u>예비적 피고 ○○시장에 대한 소 중</u>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각하하며, <u>예비적 청구 부분(부작위위법확인)은 이유 있다</u>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대판 2023, 2, 23, 2021두44548)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 다.

- 1. 시·도지사는 <u>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u> 판단함에 있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라는 <u>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u>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u>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u>.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u>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u>된다.
- 2.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판 2023. 7. 27, 2023두35661).

32

(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 갑 등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재차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 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인 갑 등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

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u>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그에 따른 각 사립학교의 정관 등</u>이, <u>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에 해당</u>하고,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2 제1항이 사립학교 직원들의 보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u>각 학교법인의 정관이 그 직원들의 보수를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u>,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사립학교 교육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u>사</u>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이 사건 각 명령(호봉정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u>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u>,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호봉정정명령 등)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u>원고(직원)들이 제3</u>자에 대한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명령(이 사건 각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대판 2023. 1. 12, 2022두56630).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u>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중명할 책임이 있고</u>, 이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u>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은 그 특성에 따라</u>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u>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u>이 있으나(대판 2017. 6. 19, 2013두17435 등 참조),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u>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책임이 있고</u>(대판 2010. 5. 13, 2009두3460 등 참조), 이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76. 1. 13, 75누175 등 참조)(대판 2023. 6. 29, 2020두46073).

34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시설을 증설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 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②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 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 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여 구 폐 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 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사전 분석·확인을 받지 않고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 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호 (거)목. [별표 4의3] 비고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면서(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영업 정지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 내용을 합산하여 하나의 처분서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그중 이 사건 제2 영업정지처분 부분을 따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 영업정지처분 부분만 파기함이 타당하다(대판 2022. 1. 14, 2021두3737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丁주식회사가 甲회사의 사업 부문 대부분이 이전된 乙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丁회사에 대하여 甲회사에 부과된 <u>벌점이</u> 丁회사에 <u>승계</u>되었음을 이유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u>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u>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u>甲회사에 부과된 벌점은</u> 분할신설회사인 乙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丁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23. 4. 27, 2020두47892)

<비교판례>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대판 2011. 5. 26, 2008두18335).

01. 회사분할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2023 군무원 7급

: 0

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심판대상고시는 관내 음식점 및 PC방의 관리자·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u>행정처분에 해당</u>한다.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심판대상고시는 관내 음식점 및 PC방의 관리자·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심판대상고시와 동일한 규정형식을 가진 피청구인의 대면예배 제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4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대결 2022. 10. 27, 2022두48646 참조).
- 2. 심판대상고시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심판대상고시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2022. 4.경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고, 향후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청구인은 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고시와 동일·유사한 방역조치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현재 2023. 5. 25, 2021현마21).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3. 국회가 제정한 <u>경찰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원회)은</u>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u>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u>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12. 22, 2022헌라5).

38

-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3.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판 2022. 9. 7, 2020두40327).

- 0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X) 2022 소방직 9급: ○
- 02.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 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 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〇, X) 2022 경찰간부

: X

03.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O, X) 2023 군무원 7급

: 0

04.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 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은 상당하다. (○, X) 2015 국회직 8급

: 0

<참고판례>

1.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법령상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판 2010. 9. 9, 2008두22631).

-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u>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u>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u>중대한 공익상 필요가</u>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9. 10. 31, 2017두74320).
- 3.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06. 11. 9, 2006두1227; 대판 2009. 9. 24, 2009두8946).

39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u>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22. 7. 28, 2021두60748).</u>

<비교판례>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5. 11. 19, 2015두295).

40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23. 5. 25, 2021헌마 993).

41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한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 등을 의미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바417).

<u>알권리</u>는 국민이 <u>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u>하거나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국가기관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u>신문, 방송 등은 국</u>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한다(헌재 2022, 10, 27, 2021헌가4).

43

대면예배제한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고시는, 피청구인이 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 거하여 부산시내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2021. 1. 4. 0시부터 2021. 1. 17. 24 시까지 2주라는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라는 구체적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것으로, 장래의 불특정 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안을 규율 하는 것이다(현재 2023. 6. 29, 2021현마63).

44

갑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u>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u>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u>'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갑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u>일본군과 관헌에 의한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u> (대판 2023. 6. 1, 2019두41324).

<비교판례>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8. 9. 28, 2017두69892).

01.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X) 2020 국가직 7급

: X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법령 또는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위법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제도의 본질상,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이라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는 결과밖에 되지않기 때문이다(대판 2022. 10. 14, 2021두45008).

46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입장이다(대판 2023. 6. 1, 2021다202224).

47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23. 1. 12, 2021다201184).